

## 【 17 】 양주군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2002. 4.  
제출자 양주군수

### 1. 개정이유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 동법시행령(2001. 3.28, 대통령령 제17178호, 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 및 담배사업법(2001. 4. 7, 법률 제6460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사항을 보완하고,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제조담배”를 “담배”로 명칭 변경하며, 재산세 납기변경 및 농업소득세 관련 신고기간등이 소득세와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과 전체 위원 15인중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도록 개정함(안 제9조제3항)
- 나. 읍면기능전환에 따라 군 내부위임규정에서 지방세 업무 위임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군세의 부과장수사무의 위임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 다. 농업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소득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조정함(안 제51조제1항)
 

※ 기존 : 1월 31일 ⇒ 변경 : 5월 31일
- 라.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조정되어 주민 세부담을 분산시킴에 따라 도시계획세 건축물분에 대한 납기 및 과세기준일을 조정함(안 제91조)
- 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제조담배가 담배로 명칭이 변경되어 담배소비세 관련 조항의 “제조담배”를 “담배”로 개정함(안 제53조 내지 제63조)

양주군조례 제 호

##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제4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제9조의2제3항중 “제9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제9조제4항 내지 제8항”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본문중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를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납세의무자) ①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제51조제1항 본문중 “1월 31일”를 “5월 31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3호, 제54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5조 본문,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2항 본문, 제58조 제목과 본문, 제59조제3호·제6호, 제60조 본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제61조제1항및 제4항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고, 동조 제2항중“제조담배”를 “담배”로 하며, “군”을 “시·군”으로 하고, “군수”를 “시장·군수”로, “수입제조담배”를 “수입담배”로 한다.

제62조제1항제5호·제2항제1호·제3항 및 제63조 제2항·제3항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제91조 표중 건축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축물	매년 6월 1일	매년 7월 16 ~ 7월 31일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② (생략) <u>&lt;신 설&gt;</u>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④(현행 제3항과 같음)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양주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⑥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현행 제4항과 같음) ⑥(현행 제5항과 같음) ⑦(현행 제6항과 같음) ⑧(현행 제7항과 같음)
제9조의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 ~ ②(생략) ③위원장의 직무·직무대행, 위원의 임기, 간사, 위원의 수당, 심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 제9조제4항 내지 제8항----- -----

현 행	개 정 안
<p><u>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u>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군 내부 위임규정을 정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삭 제〉</p>
<p><u>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u> 시행 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0,000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p>	<p><u>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u> 시행 규칙 제6조의2제2호----- ----- ----- -----.</p>
<p><u>제37조(납세의무자)</u> 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u>제37조(납세의무자)</u> ①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p>
<p><u>제51조(신고와 납부)</u> ①농업소득 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u>1월 31일</u>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생략)</p>	<p><u>제51조(신고와 납부)</u> ①----- ----- ----- <u>5월 31일</u>----- ----- -----. ②(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53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u>제조담배</u>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제조담배</u>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흡연용의 <u>제조담배</u> 가. ~ 라.(생략)</li> <li>2. 썹는 <u>제조담배</u></li> <li>3. 냄새맡는 <u>제조담배</u></li> </ol>	<p>제53조(과세대상) ①-----  <u>담배</u>          ②-----  <u>담배</u>          1. ----- <u>담배</u>          가. ~ 라.(현행과 같음)          2. ----- <u>담배</u>          3. ----- <u>담배</u></p>
<p>제54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u>제조담배</u>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u>제조담배</u>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u>제조담배</u>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u>제조담배</u>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그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제54조(납세의무자) ①-----  <u>담</u>  <u>배</u>          ②-----  <u>담배</u>          ③-----  <u>담배</u>          ④-----  <u>담배</u></p>
제55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제55조(과세표준) -----

현 행	개 정 안
	<u>담배의</u>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6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6조(세율) ①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 라.(생략)	1. ----- 담배 가. ~ 라.(현행과 같음)
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1,040원	2. --- 담배 -----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650원	3. ----- 담배 -----
② 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금액 이하의 제조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1. ~ 2.(생략)	② 담배----- 담배----- 1. ~ 2.(현행과 같음)
제58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제58조(담배의 반출신고) ----- 담배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 대상반출을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	제59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

현 행	개 정 안
<p>장 소재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생략)</li> <li>3. 생산 또는 수입하는 <u>제조담배</u>의 품종 및 주생산 <u>제조담배</u>의 품종</li> <li>4. ~ 5.(생략)</li> <li>6. <u>제조담배</u> 보관창고의 주소 및 위치도면</li> <li>7. ~ 9.(생략)</li> </ol> <p>제60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는 <u>제조담배</u>의 제조·수입·매도등에 관한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p> <p>제61조(신고납부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u>제조담배</u>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u>제조담배</u>에 대한 산출세액을</p>	<p>-----</p> <p>-----</p> <p>-----</p> <p>-----</p> <p>1. ~ 2.(현행과 같음)</p> <p>3. ----- <u>담배</u> -----</p> <p>----- <u>담배</u> -----</p> <p>4. ~ 5.(현행과 같음)</p> <p>6. <u>담배</u> -----</p> <p>-----</p> <p>7. ~ 9.(현행과 같음)</p> <p>제60조(기장의무) ----- ----- <u>담배</u> ----- -----</p> <p>제61조(신고납부등) ① ----- ----- <u>담배</u> ----- ----- ----- ----- ----- ② ----- ----- <u>담배</u> -----</p>

현 행	개 정 안
<p>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를 <u>수입제조납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u></p> <p>③(생략)</p> <p>④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u>제조납배</u>의 품종·<u>주량</u>·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p>	<p>----- -----<u>시·군</u> ----- -----<u>시장·군수</u> <u>수입납배</u> ----- ③(현행과 같음) ④----- -----<u>담배</u> ----- -----.</p>
<p>제62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p> <p>1. ~ 4.(생략)</p> <p>5.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u>제조납배</u>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p>	<p>제62조(가산세) ①----- ----- ----- ----- 1. ~ 4.(현행과 같음) 5. ----- -----<u>담배</u> ----- -----. ②----- ----- ----- -----.</p>

현 행	개 정 안																		
<p>1.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u>제조담배</u>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p> <p>2. ~ 4.(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u>제조담배</u> 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p>	<p>1. ----- --- 담배 --- -----</p> <p>2. ~ 4.(현행과 같음) ③----- ----- 담배 ----- -----</p>																		
<p><b>제63조(납세담보) ①(생략)</b></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 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u>제조담배</u>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제조 담배</u>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b>제63조(납세담보) ①(현행과 같음)</b></p> <p>②----- ----- ----- 담배 ----- -----</p> <p>③----- 담배 ----- -----</p>																		
<p><b>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 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b></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대상</th> <th>과세기준일</th> <th>납 기</th> </tr> </thead> <tbody> <tr> <td>건축물</td> <td>매년 5월 1일</td> <td>매년 6월 16~6월 30일</td> </tr> <tr> <td>토 지</td> <td>(생 략)</td> <td></td> </tr> </tbody> </table>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축물	매년 5월 1일	매년 6월 16~6월 30일	토 지	(생 략)		<p><b>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b></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대상</th> <th>과세기준일</th> <th>납 기</th> </tr> </thead> <tbody> <tr> <td>건축물</td> <td>매년 6월 1일</td> <td>매년 7월 16~7월 31일</td> </tr> <tr> <td>토 지</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body> </table>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축물	매년 6월 1일	매년 7월 16~7월 31일	토 지	(현행과 같음)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축물	매년 5월 1일	매년 6월 16~6월 30일																	
토 지	(생 략)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축물	매년 6월 1일	매년 7월 16~7월 31일																	
토 지	(현행과 같음)																		

##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방세법시행령

**제58조(지방재정회위원회)** ①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8·7·16, 99·12·31>

②삭제 <99·12·31>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12·31>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신설 2001·3·28>

⑥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7·16>

⑦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7·16>

(본조신설 97·10·1)

제59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의결에 필요한 의안 및 관련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②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청구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3·28>

④위원회는 그 의안의 심의·의결 결과를 자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본조신설 97·10·1)

제60조 (공매처분의 보류기간) 법 제7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 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97·10·1)

제61조 (감사원 심사청구)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0·1)

(총 131)

의한다.

**제5조**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75·2·21>

**제6조** (납세고지서와 납입통지서)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2 (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징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본조신설 95·12·30)

**제7조** (부과취소 및 변경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77·1·12)

**제7조의2 (제6조의2로 이동)**

**제8조** (납부 또는 납입기일변경고지) 영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변경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기한의 연장신청 및 통지) 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12·30>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한 기한의 연장(승인)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1·12·31, 94·12·31, 2000·12·30>

**제9조의2 (물납의 절차 등)** ①영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물납부동산변경신청 및 그 허가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물납신청 또는 물납부동산변경신청 : 별지 제7호의2서식

2. 물납허가통지 : 별지 제7호의3서식

(추 141)

##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權 地方稅法

의 100分의 50의 범위안에서 加減調整할 수 있다. 〈新設 97·8·30〉

〔전문개정 73·3·12〕

## 第3款 賦課徵收

제189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1·12·29〕

第190條 (徵收方法等) ①財產稅의 徵收는 普通徵收方法에 依한다.

②財產稅를 徵收하고자 하는 때에는 納稅告知書에 建築物·船舶 또는 航空機등으로 區分하여 各個別 當該 課稅標準, 稅額과 그 合計稅額을 記載하여 늦어도 納期開始 5日前까지 發付하여야 한다. 〈개정 73·3·12, 74·12·27, 76·12·31 法 2945, 84·12·24, 89·6·16, 90·12·31, 93·6·11, 94·12·22〉

第191條 (少額不徵收) 財產稅의 稅額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財產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改正 98·12·31〉

〔本條新設 90·12·31〕

第192條 (申告義務) ①財產稅의 納稅義務者는 條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②納稅義務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市長·郡守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은 그 財產의 所有者를 納稅義務者로 하여 課稅臺帳에 登載할 수 있다. 〈新設 63·12·14, 78·12·6〉

第193條 刪除 〈99·12·28〉

第194條 刪除 〈63·12·14〉

第195條 刪除 〈94·12·22〉

第196條 (財產課稅臺帳等의 備置) 市·郡은 財產課稅臺帳을 備置하고 必要한 事項을 登錄하여야 한다.

## 第3節 自動車稅

第196條의2 (自動車의 定義) 이 節에서 “自動車”라 함은 自動車管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 또는 申告된 車輛과 建設機械管理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建設機械中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改正 86·12·31 法 3912, 2000·12·29 法 6312〉

〔本條新設 76·12·31 法 2945〕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①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주 139)

##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稅法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전문개정 2001. 12. 29)

第196條의4 (非課稅)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自動車를 所有하는 者에 대하여는 自動車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改正 79·4·16, 93·12·27 法4611>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國防·警護·警備 交通巡察 및 消防의 用에 供하는 自動車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患者輸送·清掃·汚物除去와 道路工事의 用에 供하는 自動車
3. 削除 <84·12·24>
4. 削除 <94·12·22>
5.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自動車

(本條新設 76·12·31 法2945)

第196條의5 (課稅標準과 稅率) ①自動車稅의 標準稅率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改正 90·12·31, 91·12·14, 94·12·22, 95·12·6, 98·12·31, 2000·12·29 法6312>

1. 乘用自動車

다음 表의 구분에 따라 排氣量에 시시當 稅額을 곱하여 算定한 稅額을 -自動車 1臺當 年稅額으로 한다.

營業用		非營業用	
排氣量	시시當 稅額	排氣量	시시當 稅額
1,000시시이하	18원	800시시이하	80원
1,500시시이하	18원	1,000시시이하	100원
2,000시시이하	19원	1,500시시이하	140원
2,500시시이하	19원	2,000시시이하	200원
2,500시시초과	24원	2,000시시초과	220원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非營業用 乘用自動車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車齡(이하 이 호에서 “車齡”이라 한다)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

(추 139)

##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 · 地籍 地方稅法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연도 또는 확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19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 계산(15일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한 금액을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제205조 (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12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72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672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초과	1천872만원 + 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제206조 (세액의 계산 및 안분) ①농업소득세의 세액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2이상의 시·군에 있는 작물의 재배지로부터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을 각 시·군에 있는 작물의 재배지에서 생기는 농업소득금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 시·군에 대한 농업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제207조 (소액부정수) 농업소득세의 산출세액이 2.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 제 3 관 신고와 납부방법등

제208조 (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추 139)

##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 · 地籍 地方세법시행령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안분 계산한다. <개정 95·12·30>

(본조신설 89·8·24)

제194조의19 내지 제194조의21 삭제 <94·12·31>

## 제 4 장 목적세

## 제 1 절 도시계획세

제195조 (토지 · 건축물의 범위)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74·12·31, 76·12·31, 89·8·24, 90·12·31, 2000·12·29>

## 1. 토지

« 이 법에 의한 종합토지세과세대상토지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2. 건축물

법 제180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부분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은 제외한다.

제196조 내지 제198조 삭제 <76·12·31>

제199조 (납세고지) 도시계획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이를 병기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90·12·31>

(전문개정 76·12·31)

## 제 2 절 공동시설세

제199조의2 (화재위험 건축물) ①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31>

1. 4층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 수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주 140)

##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 · 地籍 地方稅法

에는 농지 및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변경사항을 조사하여 농업소득세대장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제212조 (과세대장등) ①시장·군수는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에게 일기장등의 정부를 비치하게 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가 생산한 작물을 공동판매하는 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과세표준에 의한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 제 4 관 보 칙

제213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업소득 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읍·면에 농업소득조사 위원회를 둔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한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제214조 (소득세의 부과금지)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第215條 例지 第222條 削除 (2000·12·29 法6312)

## 第 5 節 담배消費稅

第223條 (定義): 담배消費稅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89·6·16, 2000·12·29 법6305, 2001·4·7>

1. “담배”라 함은 담배事業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말한다.

(총 131)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 양주군군세조례

양주군군세조례

[1991. 12. 31]  
[조례 제1410호]

전문개정 1998. 7. 9 조례 제1677호

개정 1999. 2. 13 조례 제1696호

개정 1999. 6. 14 조례 제1711호

개정 2000. 5. 15 조례 제1740호

개정 2001. 5. 21 조례 제1773호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군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민 세
2. 재 산 세
3. 자·동 차 세
4. 주 행 세(신설 2000. 5. 15)
5. 농업소득세
6. 담배소비세
7. 도 축 세
8. 종합토지세

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세
2. 사업소세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8조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추2)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주 군군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 2 절 납세자 권리보호

제6조(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과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죄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소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추2)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주군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세무과장과 지적관련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5. 기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

(추2)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양주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영 제80조·제80조의2·제194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군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세무과장과 지적관련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5. 기타 부동산 또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장의 직무·직무대행, 위원의 임기, 간사, 위원의 수당, 심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3 절 부과징수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군 내부위임규정을 정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추2)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제6조의 7

있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0,000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 2 및 자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군수는 영 제25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자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허가 등의 종목
3. 허가 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제14조(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에 관하여 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군세는 그 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

(주2)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양주군리창임명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리장과 양주군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부 교부근거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류 1매당 500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개인균등할(주소지 할)은 제외한다.

제18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 제 2 장 보 통 세

## 제 1 절 주 민 세

제19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군내에 영 제130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2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제21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 6. 14)

## 1. 개인

-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3,000원
-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 2. 법인

(추2)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 법인	50,000원

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 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 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농업소득세 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22조(신고납부) ① 법인세 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정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성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

(추2)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 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 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5. 15)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삭제 2000. 5. 15)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 법인세 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0. 5. 15)

④ 소득세 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신설 2000. 5. 15)

**제22조의2(소득세 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 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 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 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문을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연도 7월 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 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추2)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당해 소득세 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23조(수정신고납부)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법인세 할에 오류를 발견 한 때에는 법인세 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 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 2 절 재 산 세

제24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5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을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며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⑥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추2)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제27조(증과대상지역)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농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8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건축물

## (1) 주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 초과	3만6천원 + 1,200만원
1,6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600만원 초과	5만6천원 + 1,600만원
2,2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2,200만원 초과	11만6천원 + 2,200만원
3,0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3,000만원 초과	35만6천원 + 3,000만원
4,0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4,000만원 초과	85만6천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

## (3) 제1목 내지 제2목 이외의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3

## 2. 선박

(1) 고급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 제1목 이외의 선박 : 1,000분의 3

## 3. 항공기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9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양주군군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추2)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료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0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 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2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삭제 '99. 6. 14)

제34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분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추2)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35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 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 때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36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3 절 자 동 차 세

제37조(납세의무자) 국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99. 6. 14)

## 1.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세액	배기량	시시당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800시시 이하	80원
1,5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0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500시시 이하	140원
2,500시사 이하	19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2,000시시 초과	220원

1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영 제146조의 3제2항에

(추2)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text{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times 5/100)(N-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 $2 \leq N \leq 12$ )

## 2. 기타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추2)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 5.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②제1항 각호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풍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 1 ~ 6. 30	6. 16 ~ 6. 30
제2기분	7. 1 ~ 12. 31	12. 16 ~ 12. 31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 등록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의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

(추2)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과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개정 '99. 6. 14)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분할납부 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40조(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군수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제 3 절의 2 주 행 세

제41조의2(납세의무자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한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총2)

## 제5편 세율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1조의3(세율) ① 주행세의 비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 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41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 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41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 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 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부한 후 동조 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 4 절 농업소득세

제42조(납세의무자)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2인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하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

(추2)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작물재배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작물재배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46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 원을 기초 공제한다. 다만,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47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주2)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3
400만원초과 1천만원 이하	12만원+400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72만원+1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72만원+4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초과	1천872만원+8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40

제48조(작물재배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작물재배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9조(삭제 2001. 5. 21)

제50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1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 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2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업 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읍·면에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군각

(총2)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절 담배소비세

제53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제1종 퀄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 \* 2. 씹는 제조담배

## 3. 냄새맡는 제조담배

제54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 불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4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5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6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제1종 퀄련 20개비당 51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 이하인 퀄련은 20개당 40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2,60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910원

## 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1,040원

##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650원

(주2)

## 제57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②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금액 이하의 제조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1. 질련 : 20개비당 100원
2. 각련 : 50그램당 100원

제57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기타 참고사항

제58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 대상반출을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성명
3. 생산·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4. 1일평균 생산능력 또는 평균수입량
5. 제조 또는 수입판매 영업개시일자
6. 제조담배·보관창고의 주소 및 위치도면
7. 주민등록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9. 기타 참고사항

제60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1조(신고납부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을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가산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납부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차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추2)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 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3조(납세담보) ①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절 도 축 세

제64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5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기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②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 : 도살하는 소 가격의 1,000분의 10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

제66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7조(특별징수 의무자의 지정) ①소, 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소, 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②소, 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8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

(추2)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 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 무자는 도살한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69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교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가산세) 군수는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71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도살년월일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절 종 학 토 지 세

제72조(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73조(납세의무자) ①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규동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

(주2)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5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현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신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③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제74조(과세표준)**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사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영 제194조의 16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 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격은 이를

(추2)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감면조례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3. 영 제194조의 15 제1항에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종소유 임야로서 영 제194조의 15 제2항에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sup>等</sup>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개정 '99. 6. 14)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영 제194조의 15 제4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③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영 제194조의 16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제75조(세율) ①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2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천만원 초과	4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의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3
5천만원 초과	13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억원 이하	1,000분의 5
1억원 초과	38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3억원 이하	1,000분의 7
3억원 초과	178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5억원 이하	1,000분의 10
5억원 초과	378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추2)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10억원 이하	1,128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 초과	1,000분의 20
30억원 이하	5,128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30억원 초과	1,000분의 30
50억원 이하	1억 1,128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50억원 초과	1,000분의 50

②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액)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3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억원 이하	1,000분의 4
5억원 초과	19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 이하	1,000분의 5
10억원 초과	44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억원 이하	1,000분의 6
30억원 초과	1,640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0억원 이하	1,000분의 8
50억원 초과	3,240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100억원 이하	1,000분의 10
100억원 초과	8,240만원 + 100억원 초과금액의
300억원 이하	1,000분의 12
300억원 초과	3억 2,240만원 + 300억원 초과금액의
500억원 이하	1,000분의 15
500억원 초과	6억 2,240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③ 제73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상토지"이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99. 6. 14.)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추2)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 3. 제1호 내지 제2호

## 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76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당해년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7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구판·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8조(부과·징수 등) ①종합토지세는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영 제194조의 1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을 군수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액의 합산·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104조의 16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9조(세액조정) 군수는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17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80조(신고의무) ①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종중도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종중도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04조의 18의 규정을 적용한다.

(추2)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⑥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삭제 '99. 6. 14)

⑧법 제234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공람 및 이의신청) ①군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빼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등) 세무공무원이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의 매각·등기·등록 기타 토지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3조(과세대장 비치) 군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 3 장 목 적 세

## 제 1 절 도 시 계 획 세

제84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2. 건축물

(주2)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85조(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6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료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7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장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증 다음에 정

(추2)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 재개발사업지구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제90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 1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기
건축물	매년 5월 1일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토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제92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93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4조(신고의무)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 21항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99. 6. 14)

제95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3회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절 사업소세

제96조(납세의무자) 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추2)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97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98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 제2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99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 까지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작제 '99. 6. 14)

제101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추2)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 6. 기타 필요한 사항

## 부 칙 (1991. 12. 31 조례 제1410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군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 칙 (1994. 2. 12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1995. 7. 26 조례 제1538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 칙 (1996. 1. 11 조례 제15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1조제2항 소득할의 세율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년 12 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 부 칙 (1996. 7. 8 조례 제1571호)

(추2)

##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7. 12. 31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8. 7. 9 조례 제16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 칙 (1999. 2. 13 조례 제1696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1999. 6. 14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8조 및 제39조는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00. 5. 15 조례 제17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형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추2)

제5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 (2001. 5. 21 조례 제1773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추2)

## 양주군군세조례 개정

**개정구분** : 부분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 동법시행령(2001. 3.28, 대통령령 제17178호, 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 및 담배사업법(2001. 4. 7, 법률 제6460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사항을 보완하고,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제조담배”를 “담배”로 명칭 변경하며, 재산세 납기변경 및 농업소득세 관련 신고기간등이 소득세와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과 전체 위원 15인중 위원장이 대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도록 개정함(안 제9조제3항)
- 나. 읍면기능전환에 따라 군 내부위임규정에서 지방세 업무 위임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 다. 농업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소득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조정함  
(안 제51조제1항)  
※ 기준 : 1월 31일 ⇒ 변경 : 5월 31일
- 라.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조정되어 주민 세부담을 분산시킴에 따라 도시계획세 건축물분에 대한 납기 및 과세기준일을 조정함(안 제91조)
- 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제조담배가 담배로 명칭이

변경되어 담배소비세 관련 조항의 “제조담배”를 “담배”로 개정함  
(안 제53조 내지 제63조)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지방세 심의위원회)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 지방세법 제189조(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 지방세법 제196조의 3(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208조(농업소득세 신고납부)
- 지방세법시행령 제199조(도시계획세 납세고지)
- 지방세법 제223조(정의)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 :

- 2002. 3. 2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기타참고사항** :

- 관리조례